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 : 한준호 • 박홍배 • 김병기

김한규 • 이연희 • 허종식

권칠승·박상혁·조 국

이기헌 · 임미애 · 한민수

강유정 · 조승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·횡령·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·횡령·배임 등을 추가하고,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조의2제5호, 제39조 의2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5호자목 중 "제350조(공갈) 및 제352조(미수범)(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"를 "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48조(준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 및 제352조(미수범)의 죄"로 하고,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파목(종전의 타목) 중 "차목까지의"를 "카목까지의"로 한다.

차. 「형법」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(횡령, 배임),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및 제357조(배임수증재)의 죄

제3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2(노인학대 관련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(이하 이조에서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참여 기관의 종류, 역할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그 밖의 운

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	제1조의2(정의)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노인학대관련범죄"란 보호	5
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	
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	
죄를 말한다.	
가. ~ 아. (생 략)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자. 「형법」 제2편제39장 사	자
기와 공갈의 죄 중 <u>제350</u>	<u>체347</u>
조(공갈) 및 제352조(미수	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
범)(제350조의 죄에만 해당	<u> 터등 사용사기), 제348조</u>
<u>한다)의 죄</u>	(준사기), 제350조(공갈),
	제350조의2(특수공갈) 및
	제352조(미수범)의 죄
<u><신 설></u>	차. 「형법」 제2편제40장 횡
	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
	<u>조(횡령, 배임), 제356조</u>
	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	및 제357조(배임수증재)의
	<u>죄</u>
<u>차.</u> ・ <u>카.</u> (생 략)	<u>카.·타.</u> (현행 차목 및 카목

 타.
 가목부터
 차목까지의
 죄

 로서
 다른
 법률에
 따라
 가

 중처벌되는
 죄

<u><신 설></u>

과 같음)	
<u>과.</u>	- <u>카목까지의</u>

제39조의22(노인학대 관련 지역
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・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
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
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9
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
호전문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,
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
사회 통합지원체계(이하 이 조에서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
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
② 참여 기관의 종류, 역할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그 밖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